

의안번호	2200612
의 퇴 인	윤후덕의원
회 답 일	2024. 8. 9.
추 계 번호	24D1288
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두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,500만원, 2030년 1,6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7,700만원(연평균 1,500만원)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위원회 설치·운영 (안 제24조의2)	15	15	15	16	16	77	15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4조의2(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)	전단등 살포가 국민의 생명·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둠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24조의2(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소비자물가상승율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⁾
- 안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법안 심의의결 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,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위원회 설치(안 제24조의2)

- 위원회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예산을 참고하여 추계
 - 통일부의 유사사례인 남북관계발전위원회(위원장 통일부장관, 위원수 총 30명: 당연직 15명, 위촉직 15명)의 2023년 회의예산을 준용하여 이와 동일하게 1,476만원으로 추정하고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
 - 개정안에서 위원회는 위원장(통일부장관)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 중 10인 이상은 접경지역의 주민으로서 국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도록 규정함
- 추계 결과 위원회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7,700만원으로 추정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

(2024년 7월 기준, 단위: %)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(%)	2.2	2.2	2.1	2.1	2.1	2.0

[표 2] 위원회 운영 등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위원회 운영	15	15	15	16	16	7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한예슬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한예슬	02-6788-4831	yeseulhan@assembly.go.kr